

- ▶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프로그램 (Dynamic Discounting-Supply Chain Program)**
- ▶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약관 안내 및 수락**

“HSCF 플랫폼 약정서”, “할인 공급업체 DD-SCF 약관” (이하 총칭하여 “약관”) 그리고 본 서면은 [구매기업 명](“구매기업”)의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프로그램(“DD-SCF”)과 관련하여 할인 공급업체와 HSBC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조건을 구성한다.

할인 공급업체는 HSBC 거래당사자가 DD-SCF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만 플랫폼(약관의 정의에 따름) 접근을 제공함을 인정한다. 또한, DD-SCF 플랫폼 접근 및 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또는 조치는 (a) **할인 공급업체에 대한 HSBC 그룹의 서비스 제공으로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며**(HSBC 그룹과 별도로 합의된 서비스 그리고/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 (b) **할인 공급업체가 HSBC 그룹의 “고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HSBC 거래당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구매기업과의 연락 및 서면 등의 송수신 포함)은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에 제공하는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HSBC 거래당사자는 항상 구매기업의 대리인 그리고/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

약관과 본 서면 간 상충 또는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서면에서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 본 서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서면 내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수락

할인 공급업체가 본 서면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할인 공급업체는 약관의 수락을 확인한다.

HSBC 거래당사자는 다음 내용을 전제로 할 수 있다.

- (a) 본 서면을 날인한 자는 할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약관을 수락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있다.
- (b) 할인 공급업체는 약관에 대한 동의 및 이행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 (c) 약관에 대한 동의 및 그러한 동의를 위한 권한 부여는 할인 공급업체의 내규에 따르며, 해당 날인자는 HSBC 거래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약관의 정의에 따름) 할 수 있는 타인을 임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 HSBC 거래당사자 및 준거법

본 서면에서 HSBC 거래당사자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 지점을 의미한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약관 및 본 서면과 관련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원을 비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할인 공급업체는 약관에 합의한다.

이름: \_\_\_\_\_

회사: \_\_\_\_\_

날짜: \_\_\_\_\_

직위: \_\_\_\_\_

명판과 인감

\_\_\_\_\_ (인)

## 할인 공급업체 DD-SCF 약관

---

### 할인 공급업체 세부정보

---

- 할인 공급업체 정식명칭 [ ]
- 주소 [ ]
- 우편번호 / 사서함 [ ]
- 연락담당자 이름 [ ]
- 이메일 주소 (연락담당자) [ ]
- 이메일 주소 (메일 수신인)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프로세스 조항

---

다음 프로세스 조항은 "HSCF 플랫폼 약정서"의 변경 사항(있을 경우)이 적용된다.

구매기업은 지급을 위해 승인한 송장("승인된 송장")에 대한 세부 정보와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의 조기 지급 시 적용하기로 합의한 할인("합의된 할인") 조건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 제공한다. 또한 구매기업은 승인 금액, 송장 결제일(아래 정의에 따름), HSBC 거래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기타 정보를 통지하여,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할인 공급업체는 플랫폼 웹사이트(HSCF 플랫폼 약정서의 정의에 따름)에 로그인하거나, HSBC 거래당사자가 통지한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승인된 송장을 조회, (구매기업이 명시한 송장 결제일로부터 [ 2 ]영업일 전에) 조기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HSBC 거래당사자에 또는 플랫폼(HSCF 플랫폼 약정서의

정의를 따름) 상에서 승인된 송장에 대해 매번 자동으로 조기 지급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선택(조기 지급 자동 요청)하였을 수도 있다.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할인 공급업체에게 조기지급을 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공제 및 크레딧 노트(Credit Note, 유보금)이 해당 지급금에 적용된다. 송장 결제일 전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르면 익 영업일에 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HSBC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은 규제 등을 적용하여 HSBC 거래당사자 재량에 따라 이행되며, HSBC 거래당사자는 할인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인 공급업체는 송장 결제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차감 내용(합의된 할인 금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송장 결제일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기업에게 직접 문의하기로 한다.**

**조기지급의 경우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 통지한 합의된 할인을 적용한다.**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시 송금 수수료 [            원]가 적용되며, 지급금은 관련 수수료 차감 후 지급된다.

구매기업은 송장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승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 공급업체는 구매기업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HSBC 거래당사자에 조기지급을 요청(해당할 경우 자동 요청 포함) 할 수 없다.

수수료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할인 공급업체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되고 할인 공급업체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중개은행에서 할인 공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에 추가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 일 전의 서면 통지(이메일 통지 포함)를 함으로써 본 프로세스 조항(또는 그 일부)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속 존속하며 해지 전에 HSBC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모든 승인 채권에도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된다.

할인 공급업체는 HSBC 거래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약관 또는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HSBC 거래당사자는 할인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HSBC 거래당사자는 본 프로세스 조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은 HSBC 거래당사자가 할인 공급업체에게 행한 통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 후 30 일째 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통지는 할인 공급업체에 서면(이메일 포함) 발송 또는 플랫폼 개발자 웹사이트(플랫폼 약정서에 정의됨) 및 HSBC 거래당사자가 할인 공급업체에 통지한 기타 웹사이트에 해당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HSBC 거래당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언제든지 본 프로세스 조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조항은 할인 공급업체에 이를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 필요한 특정 조건 추가

할인 공급업체는(할인 공급업체가 HSBC 거래당사자에 달리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그룹 계열사가 할인 공급업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그룹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우편, 이메일 및/또는 전화로 할인 공급업체에 연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할인 공급업체는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계열사가 공개된 연락처, 그리고 상기 목적으로 할인 공급업체가 HSBC 거래당사자에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러한 연락처 정보에는 담당자 회사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할인 공급업체는 해당 담당자들에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락처 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할인 공급업체가 이러한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clientservicesel@kr.hsbc.com]로 연락한다.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그룹 계열사는 할인 공급업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 공급업체를 상대로 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제 3 자에게 할인 공급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정의

**“영업일(Business Day)”**이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HSBC 그룹”**이란 HSBC Holdings plc 및 그 자회사 및 해당 지점을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의미한다.

**“송장 결제일”**이란 구매기업이 승인된 금액의 결제일로 확인(또는 구매기업 지급 일정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결정)한 날짜(송장 기일과 다를 수 있음)를 의미하며, 동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로 한다.

**“할인 공급업체(Dynamic Discounting Supplier)”**란 구매기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구매기업 대신하여)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합의된 할인에 따라 조기 지급을 받는데 합의한 공급업체를 말한다.

**“합의된 할인(Agreed Discount)”**이란 구매기업이 할인 공급업체와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할인 공급업체에 해당함을 HSBC 거래당사자에 통지한, 송장 결제일 이전 조기 지급에 대한 할인 체계를 말한다.

## 확인, 보장 및 진술

할인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고, 이를 보장 및 진술한다.

- 할인 공급업체는 할인 공급업체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며 할인 공급업체에 의하여 또는 할인 공급업체를 상대로 도산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 할인 공급업체가 구매기업과의 DD-SCF 공급망 솔루션에 관여하는 것이 할인 공급업체와 HSBC 거래당사자가 소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내에서 유효한 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되는 부패 및 뇌물 금지 법령에 위배된 적이 없으며 이를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할인 공급업체는 사업, 상업적 이익 또는 여하한 기능이나 활동의 부적절한 이행을 구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또는 상업적 뇌물 또는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노리거나 이를 수락 또는 묵인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유가의 양도, 제공, 약속을 하거나 또는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의 수령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이를 수락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할인 공급업체는 본 약관 상 할인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할인 공급업체의 관련인, 대리인 또는 하도급인으로 하여금 전술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할인 공급업체나 그 자회사,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계열회사들 누구도 (i)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통화청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정부기관이 발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제재(총칭하여 "제재")의 대상이거나, 또는 (ii) 제재대상 국가나 영토에, 또는 그 정부가 제재대상인 국가나 영토에 소재하거나, 그러한 곳에서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해당인")이거나, 또는 해당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 할인 공급업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재대상인 국가나 영토, 즉 그 정부가 제재대상인 국가나 영토에서 해당인의 또는 해당인과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여하한 해당인의 제재 위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DD-SCF 공급망 솔루션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할인 공급업체는, 할인 공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각 관할 및 각 승인 송장과 관련하여, 모든 중대한 면에서 제재, 자금세탁 방지, 수출 통제 및 기타 요구되는 수출입 인허가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있으며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승인 송장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뇌물, 부패, 탈세 또는 제재에 연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HSBC 거래당사자에 즉시 통지한다.

- HSBC 거래당사자는 할인 공급업체가 행한 진술이나 보장이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HSBC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기지급을 거부, 중단 또는 취소하고 및/또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 할인 공급업체가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의 이메일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경우, HSBC 거래당사자는 재량에 따라 승인 송장, 승인채권, 승인금액, 지급일 및 (구매기업 할인 및 수수료 지급 후) 관련 순 지급금을 명시한 관련 지급정보에 관하여 할인 공급업체에게 이메일을 송부할 수 있다 (또는 플랫폼 개발자(HSCF 플랫폼 약정서에 정의됨)로 하여금 할인 공급업체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HSBC 거래당사자가 암호화 이메일 솔루션인 Securemail 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약관이 적용되며, 할인 공급업체는 HSBC 거래당사자의 이메일을 수신하기 위해 별도로 이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HSBC 거래당사자는 자신이 할인 공급업체에게 발송하거나 플랫폼 개발자로 하여금 발송하도록 승인한 이메일 상의 과실 또는 누락에 대하여 HSBC 거래당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할인 공급업체(또는 구매기업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HSBC 거래당사자가 행한 지급으로 인해 할인 공급업체에게 여하한 관할에서 납부해야 하거나 부과되는 여하한 성격(정부 또는 기타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그에 대한 이자, 벌과금 및 가산금 포함)의 세금(부가가치세금, 판매세, 원천징수세금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징수금, 부과금, 관세, 부담금, 과세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HSBC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세금에 대한 할인 공급업체의 의무와 관련하여 할인 공급업체가 행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할인 공급업체는 본 약관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할인 공급업체, 또는 할인 공급업체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행한 지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가 현지 또는 외국의 세무당국이나 감독 기관의 요구로 행해야 하는 세금으로 인한 공제를 할 수 있으며, HSBC 거래당사자가 공제된 금액을 해당 세무당국 또는 감독 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할인 공급업체는 (i) 할인 공급업체의 본 약관 위반 및 (ii) 본 약관 및 HSBC 거래당사자가 할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HSBC 거래당사자가 납부해야 하거나 HSBC 거래당사자에 청구되는 관련 세금(HSBC 거래당사자에 부과되는 해당 소득세는 제외하나 부가세, 판매세, 원천징수세금, 인지세, 등록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채무로부터 HSBC 거래당사자를 면책한다; 할인 공급업체는 본 조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HSBC 거래당사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HSBC 거래당사자가 행하는 모든 지급은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HSBC 거래당사자는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 제공한 계좌 내역을 검증할 의무는 없다. 지급된 금액, 상계, 반대청구, 크레딧 노트(credit notes), 공제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할인 공급업체와 구매기업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음 공개 조항은 해지 후에도 존속하며 유효한 해지 후 3년 동안 구속력을 갖는다.

- 할인 공급업체는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인 공급업체, HSBC 거래당사자 및 구매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경우, HSBC 거래당사자가 이 약관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정보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a) HSBC 거래당사자의 실제 및 예정 승계인 및 양수인 (b) HSBC 그룹 내 회사 (c) HSBC 거래당사자의 전문 자문 (d) 평가기관, 실제 또는 예정된 보험회사 또는 기타 HSBC 거래당사자에 신용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e) HSBC 거래당사자가 승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 (f) 법에 따라 또는 법원이나 감독 기관, 감독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g) 연방준비은행 또는 중앙은행 또는 (h) 플랫폼 개발자. 다만, 상기 (a), (b), (c), (d), (e) 또는 (h)호에 따른 공개의 경우, 공개를 받는 대상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할인 공급업체는 (합리적으로 행위 하는) HSBC 그룹 계열사가 현지 또는 해외의 세무 당국 또는 감독 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준수를 입증 및 준수 불이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할인 공급업체의 세무 상황, 신원 또는 할인 공급업체의 최종 소유자 또는 중간 소유자의 신원, 세무 상황에 관한 정보나 증빙서류(이하 "세무정보")가 필요한 경우 HSBC 거래당사자에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 할인 공급업체는 HSBC 그룹 계열사가 할인 공급업체의 세무정보 또는 할인 공급업체의 최종 또는 중간 소유자의 세무정보(해당할 경우), 할인 공급업체, 본 약관과 승인채권 및 할인 공급업체 또는 할인 공급업체의 최종 또는 중간 소유자 간의 관계를 포함한 본 약관 및 매입한 승인채권에 관한 정보를 현지 또는 외국 세무당국이나 감독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공 해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할인 공급업체의 최종 또는 중간 소유자의 서면 권한이나 동의를 구하기로 약속한다).
-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HSBC 거래당사자에 법규 및 계약 상 의무 또는 HSBC 거래당사자 정책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그룹의 명성을 훼손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지급 수령을 위한 계좌 세부정보:**

구매기업은 할인 공급업체의 계좌 세부정보를 HSBC 거래당사자에 제공한다. 할인 공급업체이 지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 세부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할인 공급업체은 구매기업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할인 공급업체는 계좌 세부정보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